

붙임.

대통령령 제            호

## 국방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AI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방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방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한다.

1. 국방혁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방혁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4.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민·관·군 협업에 관한 사항
5.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법령 제정·개정, 제도개선,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2. 국방혁신과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요청

나. 조사, 연구 또는 평가 등의 의뢰

2.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4년간 존속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